

행정자치부

기관경고·통보

제 목 부산 ○○~○○구간 등 지하철공사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부산광역시(부산○○○○)

내 용

부산도시철도 ○○~○○선 건설사업(본선연장 6.90km, 차량기지 1개소, 정거장 6개소)은 부산광역시 ○○구와 ○○구 ○○동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건설노선으로서 두 지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수단 부족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1년까지 총사업비 5,67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다.

2010년 3월 예비타당성조사(B/C 0.872, AHP 0.503)가 통과됨에 따라 2010년 7월 (주)○○(대표 ○○○)와 3개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였고, 국토해양부로부터 2013년 1월 기본계획 확정·고시 받았으며, 그 후 부산광역시 ○○○○위원회 및 ○○○○○○위원회의 심의로 총 5개 공구로 분할 결정하여 추진하였다.

【표 1】 부산 ○○-○○구간 지하철 공사 현황

구분	공사규모	공사기간	총공사비		시공사	주관사 대표	입찰 방법
			최초	준공			
계	L=6.9km 정거장 6개소 차량기지 1식	2010년~ 2021년	5,671	-	-	-	-
1공구	L=1,495m 정거장 2개소	'15.12.23.~ '20.11.25	941	-	○○건설(51%) ○○건설(36%) ○○건설(13%)	○○○	턴키 공사
2공구	L=1,302m	-	755	-	조달청 입찰절차	-	기타

	정거장 1개소				진행중 (계약의뢰)		
3공구	L=2,312m 정거장 1개소	'16.7.20.~ '21.6.23	729	-	○○중공업(56.55%) ○○(25%) ○○종합건설(9.225%) ○○종합건설(9.225%)	○○○	턴키 공사
4공구	L=755m 차량기지 1개소	-	648	-	조달청 입찰절차 진행중 (계약의뢰)	-	기타
5공구	L=1,034m 정거장 2개소	'15.12.4.~ '20.11.6	910	-	○○건설(30%) ○○건설(20%) ○○건설(20%) ○○건설(20%) ○○○건설(10%)	○○○	턴키 공사
감리	1~5공구	'16.10.17.~ '21.6.30	115	-	○○엔지니어링(주) 등 13개사	○○○	-
기타	설비공사, 보상비, 설계비 등		1,573	-	-	-	-

※ 자료근거 : 부산○○○○ 작성 제출

1. 권한이 없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 사전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15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는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심위원회³⁰⁾에서 심의하여야 하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³¹⁾에서 실·국장으로 구성하여 사전에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을 심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부산광역시(○○○○과)에서는 2012. 11. 14. 부당하게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 ‘대형공사 입찰방법에 대한 내부방침 전 사전에 시정조정위원회 자문’을 이행하라는 공문³²⁾을 본청 및 소속 산하기관에 통보하였다.

그리고 위 관서 ○○○○○○○실에서는 2013. 7. 30. 부당하게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 ‘지역 제한입찰, 지역 의무도급, 주 계약자 공동도급 미적용(제외)사업’ 등에 대해 ○○○○위원회에 상정하라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계약분야 개선 계획’을 부산광역시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에 일제히 통보 하였다.

또한 위 관서 ○○○○○○실에서는 「지방계약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유일하게 실과 및 소속·산하기관 중에서 부산○○○○ 지하철 사업만 ‘부

30) ○○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안별로 ○○○○○○○장 또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및 구·군 소속의 4급 이상 기술직군 공무원, ○○○○○○위원회 및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건설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1)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주요정책 및 시책결정·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본청 및 시청 등 3급 이상 24명의 국장급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2) 공문 제목 : 일괄입찰 제도 운영개선방안 ○○○○과-0000(2012.00.00.)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8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설계·시공 일괄 입찰은 예정가격 없이 입찰공고한 후,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적격자로부터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사의 경우에는 시공물량이나 설계를 계약상대자가 제안하게 되어 있고, 사실상 공사물량과 공사의 기술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전적격심사에서 1개 컨소시엄이 재입찰에 참여하여 유찰이 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확정계약은 불가능하다.

또한 행정자치부 ○○○○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설계·시공일괄입찰 공고가 2회 유찰 하였다는 사유로 수의계약 할 수 없다(’13. 5. 14 등)”고 수차례 해석한 바 있으며, 2014. 8. 21. ○○도 및 ○○시 기관운영감사결과 “○○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으로 2회 유찰되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과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의 평균 낙찰율 보다 높은 낙찰율(98.98%)로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주석³³⁾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공개하였다.

가. ○공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부산○○○○에서는 2014. 2. 18. 부산○○철도 ○○~○○선 ○공구 건설공사가 3회 유찰이 되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수의계약 진행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였다.

이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2014. 2. 19. ‘설계·시공 입찰’은 계약의 목적·

33) 턴키공사 입찰공고가 2회 유찰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성질, 입찰 및 계약절차 등의 특성에 비추어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확정계약은 곤란하며, 추가 예산확보나 공사 시공물량 조정 없이 단순히 입찰공고일이 조정되는 재공고 후에도 유찰이 불가피하므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위 공사에서는 부산○○철도 ○○~○○간 건설공사(○공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고 후 2회 또는 3회 유찰이 되었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고, 입찰조건이나 방법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 또는 재공고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했다.

그런데 2014. 2. 19.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이 곤란하다고 회신된 이후, 2014. 5. 27. ○○○○○장 주관으로 다른 입찰방법 비교, 법률자문, 사례조사 결과 등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하겠다고, 위법·부당한 사업추진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였다.

그 후 ○○○○○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와 「지방계약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고 허위 보고 서류를 작성하여 부산○○○○ 사장에게 ○공구를 수의계약하겠다고 방침 결정을 받고, 2015. 12. 23. 1개 컨소시엄사만 참여하여 3회 유찰이 되자 위법·부당하게 (주)○○○○건설(대표 ○○○)외 2개사와 941억원에 수의계약 체결한 사실이 있다.

나. 0공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위 공사에서는 조달청에 입찰공고 의뢰하여 2013. 10. 16. 부산○○철도 ○

산광역시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장과 행정부시장 방침을 받아 주요정책 등에 해당한다고 부적정하게 판단하여 대형공사 일괄입찰 방법, 수의계약 등을 [표 1]과 같이 심의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부산○○○○에서는 부산광역시 공문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시정조정위원회에 4건(5,538억원 상당)을 상정·심의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부적정하게 2건(1,670억원 상당)에 대해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다.

【표 2】 권한이 없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도시 철도 관련 심의 현황

사업명	시정조정위원회				비고
	사업비 (억원)	안건내용	의결내용	의결 일자	
계	5,538				
○○-○○선	3,852	○○-○○선 입찰방법 사전심의	1,3,5공구는 턴키 2,4공구는 기타공사	13.5.16	
○○철도 ○호선	3	○○철도 ○호선 변전설비 교체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13.9.12	
○○-○○ ○공구	951	○○철도 ○○-○○ 수의 계약 심의	수의계약 및 낙찰율	14.5.29	계약금액 (941억)
○○-○○ ○공구	732	○○철도-○○-○○선 (○○-○○)지하화	지하와 재입찰	14.10.16	계약금액 (729억)

※ 자료구성 : 부산광역시 ○○○○○○○실에서 작성 제출

2. ○○~○○선 0공구, 0공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으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선 ○공구 건설공사(73,217백만원)의 입찰참가자격 적격자 명단³⁴⁾을 통보받았다.

또한 위 공사에서는 ○공구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고가로 되어 있고 교량 경관 개선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위원회에서 공정한 설계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공법검토 시기에 지역주민의 지하화 요구 등이 대규모 시위, 지방선거 공약사항 등으로 제기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지하화 공법 등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법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그럼에도 위 공사의 자체 검토도 없이 2014. 10. 6. 부산광역시 공문에 따라 권한이 없는 시정조정위원회에 기본계획상 고가로 설계된 것을 지하화하는 방안으로 상정하여 결정하였다.

2014. 10. 16. ○○○○위원회에서 지하화로 하는 것과 현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공고된 금액으로 재입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을 받고, 2014. 11. 3.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취소 요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과 동일하게 고가를 제안한 4개 업체에 부당하게 설계보상비(292백만원)를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 하고, 2015. 2. 5. ○○동 구간(○○역(○호선)~○○역(○호선)구간(2.298km, 732억))을 지하화로 하는 것으로 설계·시공입찰방법으로 조달청 재입찰 의뢰하였다.

그 후 2015. 3. 2., 2015. 3. 18. 당초 지하화를 최초 제안한 1개사(○○○○○컨소시엄)만이 입찰에 참여하여 2회 유찰하자 위법·부당하게 부산○○○○○

34) ○○○○컨소시엄, ○○○○컨소시엄, ○○○○컨소시엄, ○○○○○○컨소시엄은 고가화로 제안, ○○○○○○컨소시엄은 지하화 제안

○○○○장 주관 하에 부서 의견을 종합하여 사장에게 수의계약에 관련한 방침을 받고, 2016. 6. 26. 동 공사의 ○○○○실에 계약 의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에서는 계약가능 여부 등 계약업무에 대한 검토도 없이 2016. 7. 18. 위법·부당하게 (주)○○○○○ 컨소시엄과 수의계약(72,850백만원)을 체결하였다.

3. 원가 적정성 미 검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을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2., 나, 1) 수의계약 요령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제출된 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 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전 법률에서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원가 적정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으며, 2016. 9. 13. 개정된 법령에도 ○○○○○○○○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 0공구 원가 적정성 미검토

부산○○○○에서는 총사업비 협의시 미반영된 공사비(110억)와 기본계획 당시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40억) 등을 계약상대자인 (주)○○○○건설(대표 ○○○)외 2개사에 150억 상당을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수의 협상하였다.

따라서 위 공사에는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 수의 협상 전에 원가에 대한 적절성 및 적법성을 검토하거나,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했다.

그런데 2017년 부산광역시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에 부산광역시 ○○○실에 원가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435백만원 상당이 과다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시공일괄 입찰이라는 사유로 부당하게 지방계약법에 따라 원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지 않아 아래 【표 3】과 같이 435백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표 3】 0공구 원가 검토 내용

항목	세부내용	금액(백만원)		감액공사비
		직접공사비	도급공사비	
소 계		1,418	1,853	435
산업안전관리비 조정	관급→도급자설치 관급자재 적용	-	11	11
전기 사급을 관급으로 변경	중소기업 경쟁품목 수배전반, 조명기구	1,203	1,563	360
기계 사급을 관급으로 변경	직팽식 공조기	215	279	64

※ 자료구성 : 부산광역시 ○○○○○실 작성 제출

나. 0공구 원가 적정성 미검토

위 공사에서는 지하화에 따른 환기설비 추가, 차량기지 높이조정 등으로 최소 사업비 약 400억원 상당이 추가 소요가 예상되며, 타당성 재조사, 총사업비

조정, 기본계획 변경승인 등 1년 정도 소요되고, 중앙정부 승인 등 협의 난항이 예상된다고 (주)○○○○○컨소시엄(대표 ○○○)와 3개사와 72,850백만원으로 수의 협상을 하였다.

따라서 위 공사에는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 수의 협상 전에 원가에 대한 적절성 및 적법성을 검토하거나,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했다.

그런데 2017년 부산광역시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에 부산광역시 ○○○에 원가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57백만원 상당이 과다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시공일괄 입찰이라는 사유로 부당하게 지방계약법에 따라 원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지 않아 아래 【표 4】와 같이 57백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표 4】 3공구 원가 검토 내용

항목	세부내용	금액(백만원)		감액공사비
		직접공사비	도급공사비	
소 계		324	381	57
경계석 사급을 관급으로 변경	-	49	58	9
보도블럭 사급을 관급으로 변경	-	35	41	6
수배전반 사급을 관급으로 변경	-	240	282	42

※ 자료구성 : 부산광역시 ○○○○○실 작성 제출

4.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하지 않고 사급자재 구매 시공

舊「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30.법률 제10504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판로지원법’이라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³⁵⁾ 대상품목의 경우 관급자재로 설계 반영하여 직접 구매 하고 있다.

「관로지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³⁶⁾를 발주 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는 공사용 자재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직접 구매하여 관급자재로 관리하고,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 할 수 있으며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부산○○○○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제도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관급자재 또는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자재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공사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직접구매 예외에 대한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는 등 직접구매 할 수 없는 사유를 입찰공고에 적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공사와 책임감리는 ○○~○○~○○구간의 공급자재(화강석 판석) 승인 신청 및 검토 시, 중소기업 직접구매 제품에 해당될 경우,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또는 관급자재로 보고하여 중소기업제품을 직접 구매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사유 없이 공급자재(화강석 판석)를 부적절하게 시공사에 승인·통보(【표 5】: 7건, 10억원 상당)하여 시공을 완료한 사실이 있다.

35)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중에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자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제품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

36) 예정가격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20억 원 이상,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해당하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인 공사

또한 ○공구, ○공구, ○공구의 시공사에서 사급자재(중국산 판석) 공급원 승인 신청한 건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유 없이 공급자재를 부적절하게 시공사에 승인·통보하여 사급자재(중국산 판석)로 시공을 완료한 사실이 있다.

【표 5】 중소기업 직접구매 대상 품목(화강석 판석)을 관급자재 설계 미반영 현황

공사명	시공사 (대표사)	계약금액 (억원)	공사기간	대상품목	대상물량	대상금액 (백만원)
합 계	○○건설 등 6개사	-	-	-	-	1,016
○○선 ○공구	○○건설	1,214	'09.11.4~'16.12.31	화강석	4,551	126
○○선 ○공구	○○중공업	991	'09.11.4~'16.12.31	화강석 (중국산)	3,665	65
○○선 ○공구	○○○○	960	'09.11.4~'16.12.31	화강석	4,600	159
○○선 ○공구	○○○○○○○	1,084	'09.11.4~'16.12.31	화강석 (중국산)	9,879	314
○○선 ○공구	○○건설	992	'10.11.9~'16.12.31	화강석 (중국산)	8,830	243
○○선 ○공구	○○건설	710	'10.11.9~'16.12.31	화강석	1,661	31
○○~○○선 ○공구	○○건설	94	'15.12.23~'20.11.25	화강석	2,327	76

※ 자료구성 : 부산○○○○에서 작성 제출

또한 발주청(부산○○○○)과 책임감리는 ○○~○○선 전 구간의 아스콘 및 레미콘 등에 대해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또는 관급자재로 변경하고 직접 구매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사유 없이 설계 미반영하고 공급자재를 부적절하게 승인·통보하여 계약상대자가 사급자재로 직접구매(【표 6】 : 6건, 252억 원)하여 시공을 완료한 사실이 있다.

【표 6】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품목 관급자재 설계 미반영 현황

공사명	시공사 (대표사)	계약금액 (억원)	공사기간	대상품목	도급물량	도급금액 (백만원)
-----	--------------	--------------	------	------	------	---------------

합 계	현대건설 등 5개사	-	-	-	-	25,283
○○선 ○공구	○○건설	1,214	'09.11.4~ '16.12.31	소 계	-	5,056
				레미콘	91,298	4,280
				아스콘	5,256	227
				보도블럭	6,111	549
○○선 ○공구	○○○○○	991	'09.11.4~ '16.12.31	소 계	-	3,422
				레미콘	74,151	3,338
				아스콘	2,123	84
○○선 ○공구	○○○○	960	'09.11.4~ '16.12.31	소계	-	2,941
				레미콘	49,996	2,694
				아스콘	4,916	247
○○선 ○공구	○○○○○○○	1,084	'09.11.4~ '16.12.31	소 계	-	4,349
				레미콘	74,333	4,052
				아스콘	5,916	297
○○선 ○공구	○○건설	992	'10.11.9~ '16.12.31	소 계	-	5,068
				레미콘	72,707	4,437
				아스콘	9,935	490
				경계석	2,384	50
				보도블럭	16,871	91
○○선 ○공구	○○건설	710	'10.11.9~ '16.12.31	소 계	-	4,447
				레미콘	100,081	4,279
				아스콘	3,346	129
				보도블럭	3,445	39

※ 자료구성 : 부산○○○○에서 작성 제출

위와 같이 위 공사에서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경우 관급자재로 직접구매하지 않고 있는 등 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

[기관경고] ① 부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여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경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① 대형공사의 입찰 방법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중소기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을 확인하여 발주청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③ 부산광역시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원가의 적정성 검토 등에 대해서 ○○○실에 의뢰토록 조치하는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